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TPP 상품분야 관세철폐는 품목수 기준 95~100%의 높은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별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TRQ 등 매우 보수적인 양허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일본에 대한 공산품 양허는 내용면에서 한·미 FTA에 비해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TPP가 발효되더라도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TPP는 역내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위해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기업들의 실제 활용 가능성 및 검증 이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TPP 협정의 상품분야 양허 및 원산지 조항은 국별로 상이하고 민감성 보호를 위해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해 보다 면밀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1 TPP 상품분야 시장개방 주요 내용

- 미국,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타결한 TPP 협정은 품목수 기준 95~100%의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시장개방 수준 달성
 -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등 7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페루 등 5개국은 일부 품목을 관세철폐에서 제외
 - 공산품의 경우에는 호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10개국은 100% 관세철폐

TPP 국가별 양허현황 (품목수 기준)

구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전체	100%	95%	99%	100%	99%	100%
공산품	100%	100%	100%	99.8%	99.6%	100%
구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전체	100%	100%	99%	100%	100%	100%
공산품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12개 국가의 관세양허 스케줄(Tariff Schedule)은 국가마다 별도의 양허 카테고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국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상대 11개국 모두 동일한 양허를 설정하였으나 국가별로 민감성이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양허를 달리함

- 자국 산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국가마다 선형철폐, 비선형철폐, TRQ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허 카테고리를 사용

(예시) 미국의 국별 양허안 (HS 870323 준중형 승용차)

HS 6	기준 세율	호주	브루 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련	멕시코	뉴질 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870323	2.5%	즉시 철폐	10년 균등	즉시 철폐	즉시 철폐	25년 철폐*	10년 균등	즉시 철폐	10년 균등	즉시 철폐	즉시 철폐	10년 균등

* 미국의 양허카테고리 US15에 해당: 기준세율 2.5%(14년차까지 유지)→2.25%(15년차)→1.25%(20년차)→0.5%(22년차)→0%(25년차)

2 주요 품목의 시장개방 수준

□ (완성 자동차)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철폐를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 특히, 미국은 이례적으로 20년이 넘는 관세철폐 기간을 채택

-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2.5%를 협정 발효 후 14년간 유지, 이후 2.25%(15년차)→1.25%(20년차)→0.5%(22년차)→0%(25년차)로 철폐
- 캐나다는 발효 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6.1%를 5.5%(발효일)→5.0%(2년차)→2.5%(3년차)→2.0%(4년차)→0%(5년차)로 철폐
- 한·미 FTA 및 한·캐나다 FTA에 따라 미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캐나다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TPP 협정이 2017년 중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우리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부품)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부품 87.4%(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하였으나, 베어링, 기어박스, 샤프트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년 이상(10년, 12년, 15년)의 장기철폐로 설정

- 한·미 FTA에서도 베어링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10년 장기철폐를 설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세가 인하 중이나, HS 8708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모두 무관세 적용 중임

미국의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對日, 對韓 양허 현황

HS 8	품목명	對일본		對한국	
		미국 기준세율	對日 양허	미국의 對한국 FTA세율('15)	對韓 양허
84821050	볼베어링	9.0%	12년균등	5.4%	10년균등
84834090	기어	2.5%	10년균등	무세	3년균등
85013340	전기자동차용 모터	2.8%	15년균등	무세	즉시철폐
87060003	샤프트	4.0%	10년균등	무세	3년균등

- TPP 발효 후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이를 사용하는 미국 진출 일본 완성차 기업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완성 자동차 기업의 부품 조달이 대부분 계열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산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후 이미 무세를 적용받는 한국산에서 일본산 부품으로 조달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핵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본산에 대한 관세철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이미 관세인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 이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일본산 자동차(완성품)에 대한 주요국의 양허 현황

(단위 : %)

분류	HS 6	품목명	미국				캐나다			
			기준세율 (%)	對日 양허 ¹⁾	對日 수입 비중	對韓 수입 비중	기준세율 (%)	對日 양허 ¹⁾	對日 수입 비중	對韓 수입 비중
특수차	870310	스노우카	2.5	25년	2.3	0.0	6.1	5년	4.0	0.0
	870321	골프카	2.5	25년	1.1	0.0	6.1	5년	2.6	0.0
휘발유 승용차	870322	1000~1500cc	2.5	25년	13.2	33.1	6.1	5년	4.7	8.0
	870323	1500~3000cc	2.5	25년	23.7	12.7	6.1	5년	13.5	13.3
	870324	3000cc 초과	2.5	25년	21.3	6.6	6.1	5년	6.0	3.4
디젤 승용차	870331	1500cc 이하	2.5	25년	2.3	0.0	6.1	5년	0.0	74.2
	870332	1500~2500cc	2.5	25년	0.1	0.0	6.1	5년	0.0	0.0
	870333	2500cc 초과	2.5	25년	0.1	0.0	6.1	5년	0.3	0.0
기타	870390	기타	2.5	25년	1.5	18.2	6.1	11년균등	0.9	3.0
상용차 (트럭)	870421	5톤 이하(디젤)	25	30년	0.1	0.0	6.1	11년균등	0.3	0.0
	870422 ²⁾	5~20톤(디젤)	4/25	25/30년	10.4	0.0	6.1	11년균등	3.4	0.0
	870423	20톤 초과(디젤)	25	30년	0.0	0.0	6.1	11년균등	0.0	0.0
	870431	5톤 이하(휘발유)	25	30년	0.0	0.0	6.1	11년균등	0.1	0.0
	870432	5톤 초과(휘발유)	25	30년	0.0	0.0	6.1	6년균등	0.1	0.0
	870490	기타	25	30년	0.0	1.2	6.1	6년균등	0.8	0.0

주1 : 25년철폐: 기준세율 2.5%(14년차까지 유지)→2.25%(15년차)→1.25%(20년차)→0.5%(22년차)→0%(25년차)

30년철폐: 기준세율 25%(29년차까지 유지)→0%(30년차)

5년철폐: 6.1%(기준세율)→5.5%(발효일)→5.0%(2년차)→2.5%(3년차)→2.0%(4년차)→0%(5년차)

주2 : HS 87042210은 기준세율이 4%이며, 25년차에 관세가 철폐됨

주3 : 對日 및 對韓 수입비중은 2015.1~8월 기준

자료 : TPP 협정문, 한국무역협회(K-stat)

□ (섬유 및 의류) 상대적으로 고관세인 미국의 섬유 및 의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된 섬유제품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이 11/13년 장기철폐로 설정되어 있으나, 관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 기업들은 미국의 對베트남 관세철폐를 활용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TPP 역외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미국의 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 6	품목명	기준세율	베트남 양허	베트남 수입	점유율	
					베트남	중국
611020	면/편물제의 스웨터, 풀오버 등	5.0, 16.5	즉시, 5년균등, 11년철폐①	704.0	14.4	34.1
611030	합성섬유의 스웨터, 풀오버 등	6.0~32.0	즉시, 11년철폐①	582.1	16.0	27.7
620462	면제의 여성 바지(청바지 포함)	0.0~16.6	즉시, 13년철폐①	372.6	11.2	40.1
610462	면/편물제의 여성 슈트, 바지	10.3~14.9	5년균등, 11년철폐②	235.3	22.5	25.1
620342	면제의 남자 바지(청바지 포함)	0.0~16.6	즉시, 13년철폐①	228.7	5.9	18.0
620343	합성섬유 소재의 남성 슈트, 바지	0.0~27.9	즉시, 13년철폐①~③	210.9	22.0	22.1
610463	합성섬유 소재의 여성 슈트, 바지	14.9~28.2	즉시, 11년철폐②	201.1	22.6	19.8
620193	합성섬유 소재의 남성 코트	4.4~27.7	즉시, 5년균등	201.0	24.4	53.8
610711	면제의 남성 속옷	7.4	11년철폐①	190.9	29.3	6.4
610910	면 티셔츠	16.5	11년철폐①	185.4	6.5	9.9

주1 : 종량세는 제외

주2 : 11년철폐①(US6):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35% 철폐(10년차까지 유지)→0%(11년차)

11년철폐②(US10):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50% 철폐(10년차까지 유지)→0%(11년차)

13년철폐①(US7):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35% 철폐(12년차까지 유지)→0%(13년차)

13년철폐②(US9):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35% 철폐(6년차까지 유지)→기준세율의 15% 추가철폐(7년차)→0%(13년차)

13년철폐③(US11):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50% 철폐(12년차까지 유지)→0%(13년차)

자료 : 미국 상무성(US DOC), 한국무역협회 미국통계(2015.1~8월 기준)

□ (농축산물) 일본은 TPP를 통해 농산물 81.0%(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TRQ,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감성을 보호

○ 우리나라가 민감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은 한·미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으며, 신선과일(포도, 배, 사과 등)과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등)는 한·미 FTA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양허(붙임 참조)

– 일본은 쌀 품목에 있어 MFN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과 호주에게 일정 물량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허용기로 함(對美: 1년차 5만톤에서 13년차 7만톤까지 증량)

○ 향후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의 농축수산물 개방수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세부 품목별로 양허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3 원산지기준 : 완전누적의 도입

□ (누적 원산지기준) TPP 역내에서 생산 및 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을 도입

○ 완전누적은 계약국이 원산지인 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판정’을 받은 재료에 대해서도 그 재료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나 공정을 최종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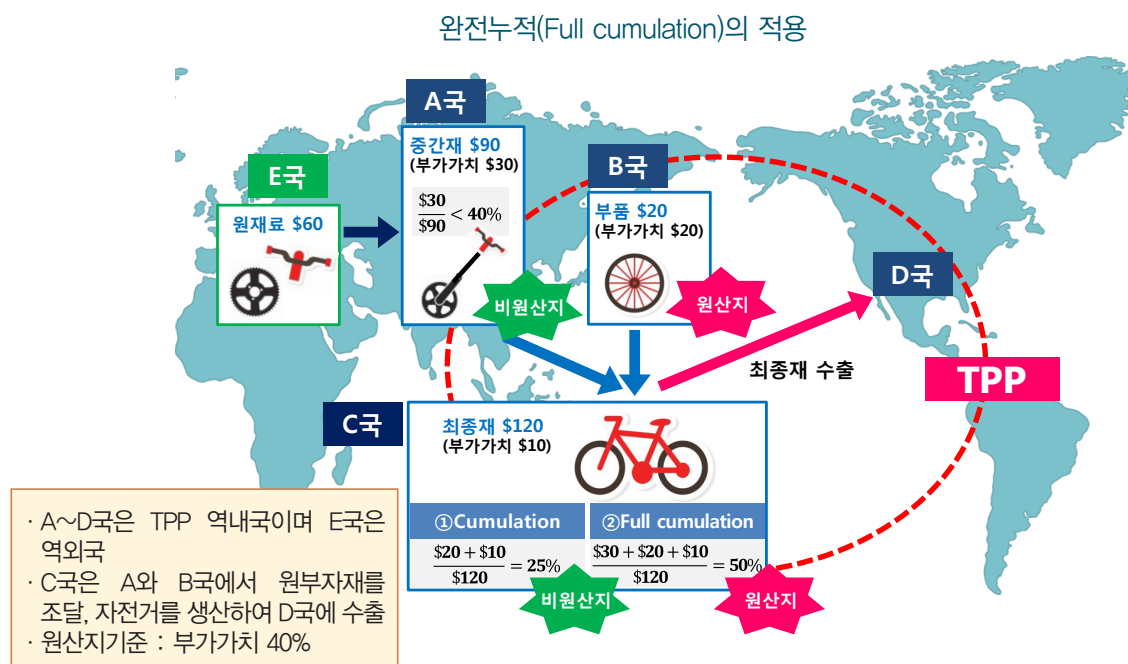
* 누적(cumulation)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최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최종 수출국의 원산지로 간주함

Article 3.10: Accumulation (완전누적조항 원문)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roduction undertaken on a non-originating material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may 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ts origin, regardless of whether that production was 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to the material itself.

○ TPP는 완전누적을 도입함으로써 역내산 원산지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원부자재 조달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이점이 있어 역내 서플라이체인(Regional supply chain) 강화

– 한편, 완전누적 적용시 최종 수출자는 생산 단계별로 투입 재료 및 수행 공정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실제 기업이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① 누적조항(Cumulation) 적용시

- B국산 부품(\$20) 및 C국의 부가가치(\$10)만 누적 → 원산지기준 40% 미충족 → 특혜관세 적용불가
- * C국 최종재의 역내부가가치: $25\% = \frac{\$20 + \$10}{\$120} < 40\%$
- * A국 중간재의 부가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간재가 A국의 원산지를 획득해야 하지만, A국은 부가가치 40%를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함 (A국 중간재의 역내부가가치: $33\% = \frac{\$30}{\$90} < 40\%$)

②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적용시

- A국의 부가가치(\$30), B국산 부품(\$20), C국의 부가가치(\$10) 모두 누적 → 원산지기준 40% 충족 → 특혜관세 적용
- * C국 최종재의 역내부가가치: $50\% = \frac{\$30 + \$20 + \$10}{\$120} > 40\%$
- * A국의 원산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A국에서 투입된 모든 재료나 공정을 누적

4 TPP 협정 발효 및 가입(Accession)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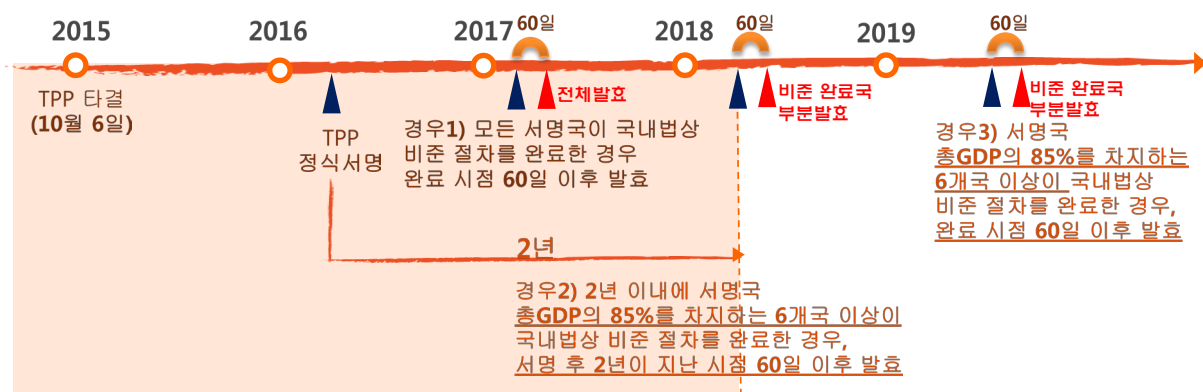
□ 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5조에 따르면, 모든 서명국의 국내법상 비준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60일 이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

○ 그러나 협정문 서명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서명국들(original signatories)이 국내법상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2년 이내에 원서명국 전체 GDP¹⁾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원서명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2년이 만료된 시점에서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 국가들에 대해서만 협정이 발효됨

○ 서명 이후 2년 이내에 협정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 원서명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원서명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서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 국가들에 대해서만 협정이 발효됨

– 원서명국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원서명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013년 기준 GDP 비중: 미국(60.4%), 일본(17.7%), 캐나다(6.6%), 호주(5.4%), 멕시코(4.5%), 말레이시아(1.1%), 싱가포르(1.1%), 칠레(1.0%), 페루(0.7%), 뉴질랜드(0.7%), 베트남(0.6%), 브루나이(0.1%)



○ 협정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6개국 이상의 국가에 대해서만 먼저 발효된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추후에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이후 TPP 위원회(Commission)²⁾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발효

1) GDP는 IMF의 달러 베이스 기준

2) TPP 협정문 제27.1조에 따라 TPP 위원회가 설치됨

- 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4조에 TPP 가입(Accession)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APEC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가입 절차를 더 까다롭게 규정
 - 가입국의 요청을 거쳐 기존 TPP 회원국과 합의한 사항(terms and conditions)에 따라 TPP 협정문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가입 당사국과 기존 회원국 각각의 법적 절차에 의거한 승인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Article 30.4: Accession (가입 조항 원문)

1. This Agreement is open to accession by:

(a) any State or separate customs territory that is a member of APEC, and ... that is prepared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e Agreement,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State or customs territory and the Parties, and following approval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egal procedures of each Party and acceding State or customs territory.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TPP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다국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상호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양허 형태를 고수(20년 이상의 장기철폐, TRQ 등)
 - 미국은 일본에 대해 공산품 100%를 양허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한·미 FTA에 비해 관세철폐 기간이 훨씬 더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TPP가 발효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TPP에서 채택한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은 역내 서플라이체인(Regional supply chain)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TPP 협정이 내년 초 정식 서명된 후 2년 내에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한 발효는 서명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나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 발효도 미국과 일본은 반드시 비준을 완료해야 함
- 협정문 및 여러 부속서를 통해 관세양허 및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고 12개국의 양허형태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깊은 검토가 요구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제현정 (02-6000-5175, hje76@kita.net)

수석연구원 박지은 (02-6000-5342, jjeunpark@kita.net)

붙임

주요 농축산물 일본의 TPP 양허 및 한국의 한·미 FTA 양허 비교

품목		TPP		한미 FTA	
		일본 기준세율	양허	한국 기준세율	양허
쌀		341엔/kg	미 TRQ(13년후 7만톤) 호 TRQ(13년후 0.84만톤)	협정대상 제외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보리	보리	쿼터 외 39엔/kg	사료용 : 즉시 그 외 : TRQ	겉보리 : 324% 쌀보리 : 299.7%	15년균등+ASG+TRQ
	맥아	쿼터 외 21.3엔/kg	미·호·캐 3국 TRQ	269%	
대두	식용	0%	기존 무관세	487%	유지+TRQ
	기타	0%	기존 무관세	487%	즉시 (채유, 사료용, 장류제조)
감자	신선 (식용)	4.3%	즉시	304%	칩용 : 계절관세 식용 : 관세유지+TRQ
	냉동	8.5%	6년균등	27%	5년균등
	감자분	20%	6년/11년균등	304%	10년균등+ASG
전분	감자전분	25% 또는 119엔/kg	유지+TRQ (미국에 추가 TRQ)	455%	15년균등+ASG
	매니옥전분	25% 또는 119엔/kg	유지+TRQ	455%	15년균등+ASG
쇠고기	냉장/냉동	39.8%	부분감축+SG	40%	15년균등+ASG
	식용 설육	161.50엔/kg	16년균등	18%	15년균등
돼지고기	냉장/냉동	저가품 : 482엔/kg 중가품 : 기준가격-1kg 당 차액	(저가품) 부분감축+SG	냉장 : 22.5%	10년균등+ASG
		고가품 : 4.3%	10년철폐+SG	냉동 : 25%	삼겹살 : '14.1.1, 철폐 기타 : '16.1.1, 철폐
치즈	신선	22.4~29.8%	16년균등/조건부 인하	36%	15년+TRQ
	가공치즈	40%	유지 + 미·호·뉴 TRQ	36%	15년+TRQ
	기타(체다 등)	쿼터 외 29.8%	쿼터 외 16년 균등 (소프트 치즈 제외)	36%	체다 : 10년균등+TRQ 그 외 : 15년+TRQ
	블루바인치즈	쿼터 외 29.8%	쿼터 외 부분감축	36%	10년균등
꿀	천연꿀	25.5%	8년균등	243%	유지+TRQ
	인조꿀	50% 또는 kg당 25엔 중 큰 것	11년균등	243%	10년균등
감귤류	만다린 등	17%	6년균등	144%	15년
	오렌지	계절관세	계절관세	50%	계절관세
사과/ 배/ 포도	사과	17%	11년철폐	45%	후지 20년 + ASG 기타 10년 + ASG
	배	4.8%	즉시	45%	동양배 : 20년균등 기타 : 10년균등
	포도	계절관세	즉시	45%	계절관세
마늘	신선	3%	즉시	360%	15년균등+ASG
	건조	9%(건조채소기타)	즉시	360%	15년균등+ASG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5년균등
양파	신선	67엔/kg 이하 : 8.5%	6년균등	135%	15년균등+ASG
		67엔/kg~73.70엔/kg : 8.5% 또는 kg당 73.70엔-수입가(차액) 중 적은 것			
		73.70엔/kg 초과 : 0%	기존무관세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2년균등

주 : ASG(Agricultural Safeguard)

자료 : TPP 협정문, 한·미 FTA 협정문, USTR